

추가약정서

(기존주택 처분조건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Ⅱ)

유니온저축은행 앞

20 년 월 일

채무자 : _____ (인)
주 소 :

채무자는 유니온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합니다.)과 약정한 20 년 월 일자 여신거래약정서(가계용)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제 1조 (목적) 이 약정서는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 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주1)}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채무자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하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제4조에 따라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하고 제5조에 따라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추가로 구입하는 주택 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 거래를 하기 위해 저축은행과 체결하는 추가 약정입니다.

주1) “세대”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구성되며, 세대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포함)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제 2조 (처분대상 주택)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소유자	주소

제 3조 (구입대상 주택)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구입하는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소유자	규제지역 구분*	주소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중 해당되는 지역을 기입

제 4조 (처분대상 주택 처분의무) ①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대출실행일(중도금·이주비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제 3조의 구입대상 주택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인 경우 1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인 경우 2년(이하 ‘정해진 기간’) 이내에 제2조의 처분대상 주택을 처분(명의이전 완료)해야 합니다.

②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제 2조의 처분대상 주택을 처분(명의이전 완료)한 경우에는 저축은행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 5조 (규제지역 소재 주택 구입시 전입 의무) ①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대출실행일(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제3조의 구입대상 주택으로 전입을 해야 합니다.

② 대출 실행 당시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전항에 따라 전입을 완료한 경우, 전입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저축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 6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시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7조 제 4항 제 2호에 의하여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고, 그에 따라 본 대출을 변제할 의무를 집니다.

1. 제 4조에 따라 대출실행일(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제2조의 처분대상 주택의 처분(명의이전 완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제 5조에 따라 대출 실행 당시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출실행일(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제 3조의 구입대상 주택으로 전입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제 2조의 처분대상 주택 외에 다른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 7조 (여신거래 약정위반)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대출 완제여부에 관계없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자의 약정 위반사실이 제공되며, 향후 3년간 금융기관^{주2)}의 주택 관련 대출^{주3)}이 제한됩니다.

주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별표5> 제1호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등

1. 제 4조에 따라 대출실행일(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제2조의 처분대상 주택의 처분(명의이전 완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제 5조에 따라 대출 실행 당시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출실행일(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제 3조의 구입대상 주택으로 전입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 제 2조의 처분대상 주택을 처분(명의이전 완료)하지 않거나, 제 3조의 구입대상 주택에 전입하지 않은 채 본 대출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